

## 2026년 천안시장애인체육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채용 공고

천안시 장애인생활체육을 선도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유능한 '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'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6. 2.

천안시장애인체육회장

### 1. 채용인원

응시분야	채용인원	근무 지역	채용 희망종목
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	1	천안시	특수체육 등 다종목

### 2. 응시자격

○ 공통요건(기준일: 채용 공고일 현재)

-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운영지침 제12조 및 천안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인사규정 제2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연령, 성별, 거주지 제한 없음
-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

○ 자격요건(기준일: 채용 공고일 현재)

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2급 이상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자격을 필히 갖춘자

○ 조건부 채용 자격요건(기준일: 채용 공고일 현재)

<p>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춘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스포츠지도사</li> <li>- 건강운동관리사</li> <li>- 유소년스포츠지도사</li> <li>- 노인스포츠지도사</li> </ul> <p>※ 조건부 채용의 경우 2회차 이내 장애인스포츠지도사자격을 취득하여야 함</p>
---

○ 채용시험 가점 대상자 및 가점

가점대상	우대사항
교육대학(원), 사범대학((대학의 (특수)교육과·체육교육과), 특수체육관련 학과 졸업자(졸업예정자 포함)	제1차 및 제2차 시험 만점의 10% 가점
대한장애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가 주최하는 전국대회 입상자	
대한장애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등록선수 출신	제1차 및 제3차 시험 만점의 5% 가점
국제대회 입상자	제1차 및 제3차 시험 만점의 10% 가점
청년층(만 34세 이하), 취업취약계층(저소득층, 장애인,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, 한부모가족 지원법 보호대상자, 북한이탈주민, 결혼이민자, 성매매피해자, 위기청소년, 갱생보호대상자, 여성가장, 노숙인)	
(장애인)국가대표 출신	제1차 및 제3차 시험 만점의 15% 가점

\* 가점은 전형별로 각각 적용하되, 가점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가점 하나만을 적용

### 3. 신분 및 근무조건

- 채용분야: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
- 채용인원: 1명
- 계약기간: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(조건부 채용 제외)
- 근무시간: 1일 8시간, 주 40시간 근무
- 보 수
  - 기본급: 월 2,335,000원
  - 정액급식비: 월 140,000원
  - 여비(교통비): 월 100,000원
  - 복지포인트: 연 300,000원
  - 명절휴가비: 기본급 50%-연 2회
  - 활동비: 월 200,000원
  - 특수업무수당: 월 100,000원
  - 초과근무수당, 장기근속·자격수당, 가족수당, 연가보상비(해당자)

### 4. 주요업무

- 지역 장애인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지도
- 장애인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 활동조사, 지도 및 관리
- 생활체육 프로그램 정보제공, 기획 및 보급(홍보)·지도
- 연간, 분기별 생활체육활동 지도계획서 작성
- 지도활동 및 생활체육 관련 상담·행정 업무
- 지역 장애인에 대한 생활체육 현장 지도

## 5. 채용방법

### ○ 채용 절차

구분	결정방법	비고
1차	○ 응시자격 충족자에 한하여 전원 합격 ※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6호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자	서류심사
2차	○ 지도 종목 수업 지도계획서 작성 및 발표(50점)	통합 면접심사
3차	○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(50점)	

### ○ 면접심사 항목 및 배점

순	구분	내용	비고
1	지도계획 작성 능력	종목 및 장애유형을 고려한 수업 설계	25점
2	지도계획 발표 능력	지도계획에 대한 전략 및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	25점
3	사명감 및 태도	지원분야에 대한 열정, 자세 및 태도	10점
4	전문지식	특수성 이해 및 관련 지식	10점
5	지도자로서의 자질	관련 지도경험 및 업무의 이해도	10점
6	의사발표력	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	10점
7	창의력 및 적극성	창의력, 논리적 사고 및 적극성	10점
<b>합계</b>			100점

## 6. 합격자 결정

- 2차(지도계획서) 및 3차(적성면접평가)의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합산하여 시험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
- 동점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결정
  1. 2차 시험의 고득점자
  2. 3차 시험의 고득점자
  3. 면접심사위원회의 결정자
- 2차 ~ 3차 시험을 합산한 시험성적이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
-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

## 7.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
공통	① 지원서 1부 ② 이력서 1부 ③ 자기소개서 1부 ④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1부 ⑤ 수업지도계획서 1부 ⑥ 주민등록초본 1부(병적사항 포함) ⑦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
해당자	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(졸업예정자일 경우 졸업예정 증명서류) 1부 ② 경기실적증명서 1부(대한장애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발급용) - 국제·국내 대회 입상실적 포함 ③ 선수등록확인서 1부(대한장애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발급용) ④ 장애인 국가대표 증명서 1부(대한장애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발급용) ⑤ 기타 가산특전 해당 서류 ⑥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⑦ 기타 자격증 사본 1부
최종합격자	①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② 건강진단서(의료기관발행) 또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 1부 ③ 징계사실유무 확인서 1부(스포츠윤리센터 발급)

## 8. 서류접수

- 원서교부: 본회 홈페이지(<http://www.casad.or.kr/>)에서 내려받기
- 접수일자: 2026. 6. 15.(월) ~ 2026. 6. 16.(화) / 17:00까지
- 접수방법: 방문, 우편 및 전자우편(e-mail)
  - ※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(17:00)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
- 우편접수: 천안시 동남구 향교1길 104-38(유량동 243-1)  
천안반다비체육센터 3층 사무실
- 전자우편접수: [yoo@casad.or.kr](mailto:yoo@casad.or.kr)

## 9. 시험일정

- 2026. 6. 2.(화) ~ 2026. 6. 14.(일): 채용공고
- 2026. 6. 15.(월) ~ 2026. 6. 16.(화): 서류접수
- 2026. 6. 17.(수):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※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
- 2026. 6. 23.(화): 2차 면접시험(예정)
- 2026. 6. 24.(수): 최종합격자 발표
- 2026. 7. 1.(수): 계약체결
- 2026. 7. 1.(수): 근무시작

※ 시험일정은 천안시장애인체육회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

## 10. 기타 사항

- 응시지원서 및 제출서류 기재사항 착오, 누락,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, 채용신체검사, 기타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
-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인사규정에 의함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회 기획총무팀 인사담당자(041-522-0014)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(붙임 1)

## 결 격 사 유

### ○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(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  - 다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
  - 라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
  - 마. 「노인복지법」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
5. 선수를 대상으로 「형법」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(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)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6.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자격이 취소(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)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### ○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운영지침 제12조(채용결격사유)에 의한 사항

1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1조의5(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2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2조(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)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도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사람
3. 타 체육단체(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9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) 재직 시 부패행위, 비위행위 등으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
4. 타 체육단체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